

교원 해외여행 규정

제정일 : 2018.06.05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의 국제학술회의 참석, 공무수행 등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 및 허가) ① 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 15일 이전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학(원)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국일 이전까지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해외여행은 수업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.

③ 교원의 해외여행이 본교의 공무수행의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교무위원인 교원의 해외여행은 위임전결규정의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조(여행기간) ① 해외여행의 기간은 학기 당(방학기간 제외) 합산하여 15일 이내로 한다.

② 제1항의 여행기간 산정 시 공무수행 기간,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의무) ① 해외여행 후 귀국한 교원은 해외여행 종료일 기준 15일 이내에 보고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(원)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교무위원인 교원은 위임전결규정의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해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반드시 해당 학기 중에 보강하여야 한다.

제5조(해외여행의 제한) 총장 또는 소속 대학(원)장은 본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수하지 않고, 해외여행을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(위반에 대한 조치) 교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여행을 한 경우 소속 대학(원)장은 교무처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7조(보칙)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학계열 임상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내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교원의 해외여행 허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